

#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04
----------	------

발의연월일 : 2024. 9. 11.

발의자 : 주철현 · 모경종 · 위성곤  
조인철 · 황명선 · 박정현  
김문수 · 천하람 · 박균택  
이병진 · 이재강 · 양부남  
이기현 의원(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unc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준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 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이들이 행한 범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8조).
- 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44조).
- 다. 장물죄에서 장물범과 본범 간에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 형의 필요적 감면에서 임의적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365조제2항).
- 라. 장물죄를 변경하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 친족간 범행의 특례 적용 또한 임의적 감면으로 조정함(안 제151조제2항, 155조제4항).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5조제4항 중 “處罰하지 아니한다”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한다.

제32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4조 중 “第329條 乃至 第332條의”를 “제329조, 제331조의2, 제332조의”로 한다.

제3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

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 (생 략)</p> <p>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u>處罰하지 아니한다.</u></p>	<p>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u></p>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생 략)</p> <p>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u>處罰하지 아니한다.</u></p>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p> <p>-----<u>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u></p>
<p>第328條(親族間의 犯行과 告訴)</p> <p>①直系血族, 配偶者,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配偶者間의 第323條의 罪는 그 刑을 免除 한다.</p> <p>②第1項以外의 親族間에 第323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告訴가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前2項의 身分關係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前2項을 適用하지 아니한다.</p>	<p>제328조(친족 간의 범행) ①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간의 제323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다.</p> <p>&lt;삭 제&gt;</p> <p>③ 제1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第344條(親族間의 犯行) 第328條 의 規定은 <u>第329條 乃至 第332</u> <u>條의 罪 또는 未遂犯에 準用한</u> 다.</p> <p>第365條(親族間의 犯行) ①前3條 의 罪를 犯한 者와 被害者間에 第328條第1項, 第2項의 身分關係 가 있는 때에는 同條의 規定 을 準用한다.</p> <p>②前3條의 罪를 犯한 者와 本 犯間에 第328條第1項의 身分關係 가 있는 때에는 그 刑을 減 輕 또는 免除한다. 但, 身分關係 가 없는 共犯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p>	<p>第344條(親族間의 犯行) ----- -----<u>제329조, 제331조의2,</u> <u>제332조의</u>----- --.</p> <p>제365조(친족 간의 범행) ① 제36 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 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 에는 같은 조를 준용한다.</p> <p>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 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 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 로 한다.</p>
---	---